

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

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6월 29일

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

○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

채용예정 직급	인원	지원요건
대체교사	3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-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 - 보육교사 업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주요 업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체교사 지원을 요청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업무 • 각 어린이집 보육업무 후 업무평가서 및 보육일지 작성

○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

-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 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7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8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9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-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*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2

전형방법 및 일정

전형구분	전형일정	비고
채용공고(홈페이지)	2020. 6. 29.(월)	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서류접수	2020. 6. 29.(월) ~ 2020. 7. 10.(금)	
서류전형(1차) 합격자 발표	2020. 7. 13.(월)	
면접	2020. 7. 16.(목)	
최종 합격자 발표	2020. 7. 20.(월)	
근무시작일	2020. 8. 1.	

※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 및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3

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0. 6. 29.(월) ~ 2020. 7. 10.(금)
- 접수방법
 - 방문접수 :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, 근무시간 평일 9:00 ~ 18:00

4

제출서류

- ① 대체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
 -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(첨부양식)
 - ③ 자격증 사본 1부
 - ④ 경력증명서 1부
- ※ 다음 (⑤~⑥)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
-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 - ⑥ 주민등록등본 1부
- ※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(2020. 6. 29.(월)) 기준
 ※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

5

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
근무직종	대체교사
근무조건	- 채용형태 : 계약직, 주 5일 근무 - 계약기간 : 2020. 8. 1. ~ 2020. 12. 31. - 복리후생 :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
보수기준	- 대체교사 지원 사업 임금기준에 따름 - 4대 보험 적용 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- 퇴직금 지급 (1년 이상 근무 시 지급)

6

유의사항

-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.
-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(전자서류 제외)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-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임용 후 서류,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결격사유 확인이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끝.

※ 문의 : 033) 641-1382 (담당자 : 김소희)